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원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94	2	1980. 11. 20	총재 김준경

1. 원안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 및 한국은행의
 기타여신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이월적용대상 결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1.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월 및 한국은행
 기타여신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이월적
 용대상 결정을 별안과 같이 각주 일부
 개정한다.

2. 실시일자 1980. 11. 20

제외관계 법구조항 한국은행법 제72조

제외처지 한국은행의 기타여신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
 이월적용대상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대금통기관
 자금지원의 관력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사항 1. 제의 관계 법 조항

한국은행법 제 72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 첨부물

가. 현행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 (요약)

나. 한국은행 대출금 상황

1012

(별첨)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 일부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구분	이율	구분	이율
담보	기타어음	연 22.0% 미만	기타어음	연 22.0% 미만
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최가 따로 정하는	증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가 따로 정하는
어		용자대상은 연		용자대상은 별도의
음		16.0%		이율을 적용한다.

1013